

투자활성화 대책(요약)

- 새로운 서비스산업 · 농림어업 중심 -

2016. 2. 17.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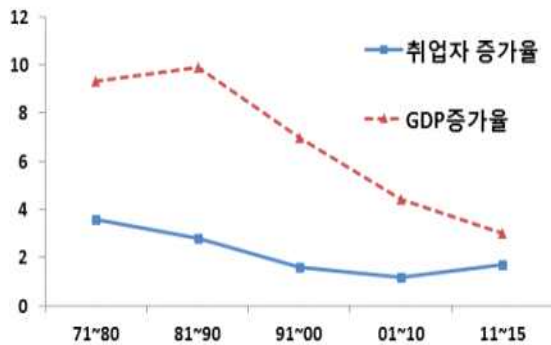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3
III. 중점 추진과제	5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5
2.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8
(1) 스포츠 산업	8
(2) 공유경제	10
(3) 헬스케어 산업	11
(4) 대학 해외진출	12
3.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13
4. 새만금 활성화 방안	15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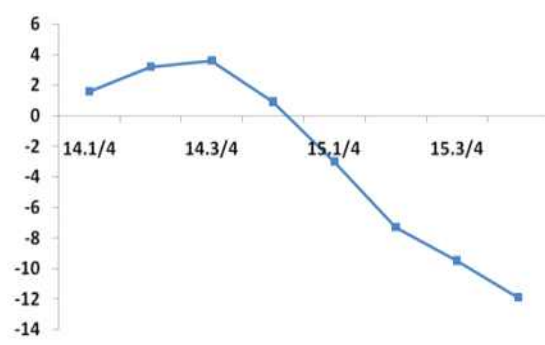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 최근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고용 창출능력이 둔화

취업자 및 GDP 증가율(% , 연평균)



*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 증가율(%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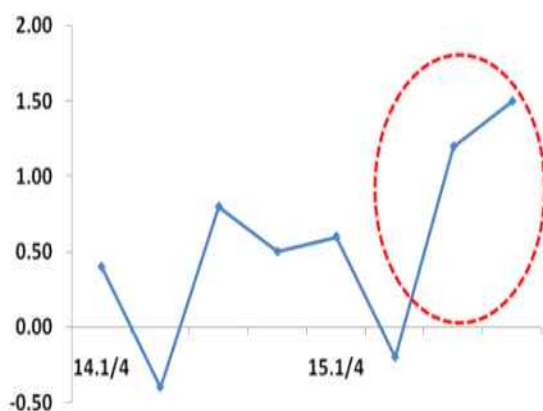
* 출처: 산업부

- 그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민간소비 개선 등 경제활성화 성과를 거두었으나,

* (재정) 추경 등 재정보강(22조원), '16.1/4분기 재정·정책금융 조기집행(21조원+α) 등 (소비)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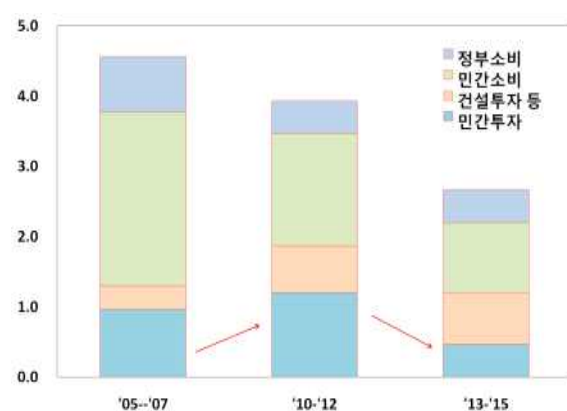
- 가계소비와 재정여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여력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필요

민간소비 증가율(% , 전기비)



*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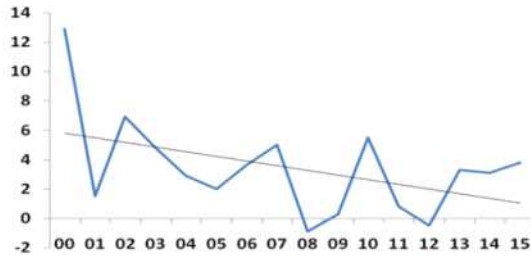
부문별 성장 기여도(%p)



* 출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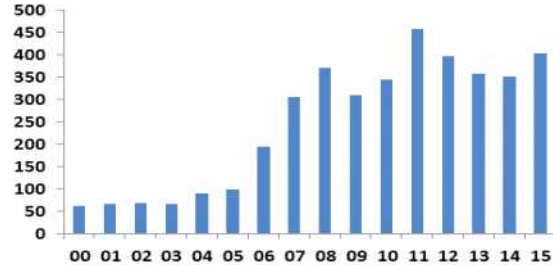
□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의 투자 기회 지속 감소

총고정자본 형성 증가율(%)



* 출처: 한국은행

해외투자 규모(억불)



* 출처: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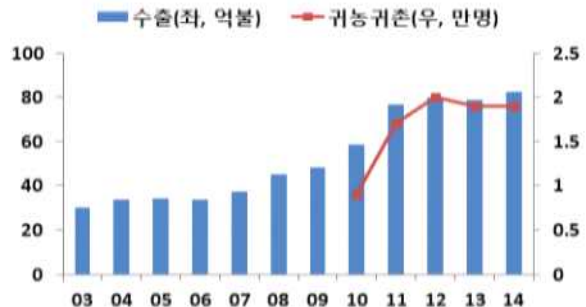
□ 따라서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신산업·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 존재
- 국민소득 증가·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한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서비스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부족
- 한-중 FTA, 귀농·귀촌인구 증가추세 등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 발생
-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합의('15.10월) 등으로 새만금 지역을 對중국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새로운 시장

구분	시장동향 및 전망
스포츠 (국내시장)	(‘13년)41→(‘17 ^e)50조원 * 관광산업(23조원)의 1.8배
바이오 (세계시장)	(‘13년)330→(‘20년 ^e)635조원 * 연평균 9.8% 성장
공유경제 (세계시장)	(‘13년)51→(‘25년 ^e)3,350억불

농림어업 수출 및 귀농귀촌인구



* 출처: 통계청

⇒ 경제활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 앞으로도 신산업·서비스업 투자기회 발굴을 지속 추진

Ⅱ. 추진 방향

- ◇ ① 즉시 투자창출이 가능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② 소득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新서비스시장 육성
- ③ 한-중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④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새만금 투자 촉진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해결(6건, 6.2조원 규모)
- ② 新기술, 新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분야 개척
 - ① (스포츠산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스포츠 시설 확충, 골프·캠핑 등 유망분야 활성화, 스포츠용품 강소기업 육성
 - ② (공유경제)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숙박·차량·금융 등) 출현에 대응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③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형성 촉진을 위한 그레이존 해소, 세제혜택·자금조달 여건 개선
 - ④ (대학 해외진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를 활성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 ③ 한-중 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규제개선·시장형성을 통하여 농림수산분야 민간투자 유입
 - 융복합·수출 촉진 등 6차 산업화, 유기농 등 프리미엄 상품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④ 새만금에 획기적 인센티브·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투자여건 개선

목표

6.2조원+ α 의 투자효과 및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

투자과 일자리 기회가 많은
새로운 분야 육성에 집중
(4대 분야, 123개 과제)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
(6개 과제)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43개 과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64개 과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10개 과제)

추진 과제

- ①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 ② K-컬처밸리
조성 지원
- ③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지원
- ④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
- ⑤ 태안 기업도시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어로 해소
- 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스포츠 산업>

- ① 시설 확충
- ② 산업 육성
- ③ 저변 확대

<공유경제>

- ① 숙박공유
- ② 차량공유

<헬스케어>

- ① 건강관리서비스
- ② 첨단바이오제품 개발
- ③ 코스닥 상장준기선

<대학 해외진출>

-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 ② 해외캠퍼스
설치 허용

① 민간투자 촉진

- 농업특화단지
- 외해양식단지
- 산지의 활용
- 농수산 벤처

② 6차 산업화

- 생산·가공·판매결합
- 농어촌 관광
- 전통주 경쟁력
강화

③ 유기농·고품질 농수산물 수출상품화

- 유기농산물
활성화
- 원산지 표시 강화

④ 귀농·귀촌 촉진

- 귀농·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
- 어업 진입장벽 완화

① 국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

②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③ 규제청정 시범지역화

- 입지규제 완화
- 규제개선
프로세스 개선

④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인허가 절차
One-stop처리
- 행정구역
조기 확정
- 새만금청의 산단
관리 역할 강화

II. 중점 추진과제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6개 프로젝트, 6.2조원)

①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3조원)

- (현황) 양재·우면 일대는 기업의 R&D 투자수요는 많은 반면 입지 특성(자연녹지, 주거지역 등)에 따른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기업의 R&D 시설 신·증설 투자에 애로
- (개선) 동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하여 투자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R&D 집적단지”를 조성(17년~)

※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방안 (예시)

- (지역) 양재IC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등
- (규제특례) R&D관련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R&D특허 우선심사 등
- (지원) R&D기업 지원시설 건립 등(창업보육공간, 임대공간 등)

⇒ (기대효과) ①3조원의 R&D 관련 투자 창출, ②인근 판교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해당지역을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

② K-컬처밸리 조성 지원 (1.4조원)

- (현황) 기업이 고양시에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중(15.2월 발표)이나 사업부지 내 공유지 대부기간 등이 불확실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 제조업체의 공장 등은 대부기간이 20년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부기간이 5년이고 수의계약도 불가
- * 공유지 대부기간(공유재산법 시행령): 5년(1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예외: 20년(벤처기업, 지방이전기업, 제조업체의 공장 등), 50년(외투기업)

- (개선)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 시설 등 서비스업종 추가(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6.2/4)

⇒ (기대효과) 1.4조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핵심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0.8조원)

- (현황) 고양시가 보전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하여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나, GB 활용사례 부족*, 서비스업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

* GB 지침상 GB 해제시 가능한 사업이 산단, 공공주택, 유통·물류단지 등만으로 규정되어 자동차서비스업으로 활용 제약

** GB 해제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상업시설 비중을 제한(산단 등의 경우 7% 수준)
→ 상업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전용단지 특성상 동 기준 충족 곤란

- (개선) GB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고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여 상업시설 비중 제한 완화*(17년 착공)

* 일정비율 이상 상업시설 입지를 허용(단, 교육시설 확대 등 공익성 보완)

⇒ (기대효과) ①단지 조성에 따른 8,000억원 투자 발생, ②튜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의왕산업단지 조성 (0.6조원)

- (현황) 의왕시 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나, 대상 부지에 대한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공장이전 및 행복주택사업 지연 우려

* (국토부) 해당부지를 의왕 ICD(내륙컨테이너기지) 확장부지로 검토
(의왕시) 해당부지 외에 타 지역은 공장이전수요를 적기에 충족 곤란

- (개선) 대상 부지 중 일부를 의왕 ICD 1·2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 → 기관간 이전해소 및 산단 조성 추진*

* 향후 일정: 산업단지 지정('16.8월) → 착공('16.10월) → 산단 준공('18년)

⇒ (기대효과) ①공장이전에 따른 6,000억원 신규투자 발생, ②행복주택사업의 적기 추진, ③기존 ICD의 확장성 보장

⑤ 태안 기업도시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0.3조원)

- (현황) 기업도시내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를 계획중이나, 기업도시 지정시 부과된 조건*과 기업도시 밖 추가부지(농지)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 식량위기 등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 상당부분을 농지로 환원('05.8월)

- (개선) 시설 투자를 위한 부지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16.12월)

*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농지환원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밖 농지를 추가로 편입하고 기업도시내 미개발 구역 등을 농지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

⇒ (기대효과) '17년부터 3,000억원 투자를 통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

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0.1조원)

- (현황)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나,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는 태양광시설 설치 불가

* 소규모 수력·풍력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발전시설 설치 가능

-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39개)에서도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및 부대시설(예: 송전용 전기설)의 설치 허용('16.10월)

⇒ (기대효과) ①에너지신산업 발전기반을 확충, ②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은 유지

[1] 스포츠 산업 활성화

◇ 스포츠 산업은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건강·여가에 대한 관심증가로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14년 관광산업 23조원, 스포츠산업 41조원('15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문체부)

⇒ '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육성

[1] 스포츠시설 확충

- (GB 활용) 엄격히 제한되어 있던 체육시설 관련 GB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6.2/4)

* (실내체육관) 800㎡크기(테니스장 1면에 불과)만 가능 → 1,500㎡까지 확대 (실외체육시설) 설치가능한 부대시설 범위 확대(조명탑·샤워실도 설치 가능)

- (공공시설 활용) 학교개방에 대해 책임문제로 학교장이 소극적 →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6.4/4)

* 학교체육시설('14년): 실내체육관 9,564개, 운동장 11,519개

- '예약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특정단체의 독점사용 방지 추진

- (국가하천 활용)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 마련('15.12월) →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지구변경 추진('16.2/4)

* (A市 사례) 금강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여 체육시설 설치 추진중

- (세제지원)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허용(조특법 시행령 개정, '16.4/4)

[2] 스포츠 시설업 육성

- (골프) 비용절감을 통한 수요확대를 위해 ①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촉진*, ②캐디·카트 선택제 확대(64→150개) 추진('16.2/4)

* 회원제→대중제 전환시 회원동의 요건 완화(현행: 100%→개선: 80%이상)
대중제 전환에 대한 특별용자 프로그램 마련(체육진흥기금 활용, 1%p 금리우대)

- (캠핑) ①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 허용(건축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6.1/4), ②농지전용시 야영장 설치가능 면적 확대(1천→3천㎡, 농지법 시행령 개정, '16.3/4) 등을 통해 캠핑장 확충

- (산림레포츠) 산림에 설치가능한 시설종류를 암벽등반, 로프체험 시설, 레일바이크 등으로 확대(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 개정, '16.2/4)

③ 스포츠 용품업 육성

- (R&D) ①스포츠산업 R&D 자금 확대('15년 130억원→'16년 141억원), ②스포츠기업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 촉진
 -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1,168억원),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324억원) 등
- (자금) ①스포츠산업 지원펀드* 확대, ②무형자산(선수, 광고권 등) 평가제를 도입하여 체육진흥기금 융자 확대** 및 금리 인하($\Delta 0.5\%$ p)
 - * '15년 385억원 → '18년 1,985억원 조성 목표(정부와 민간 50%부담)
 - ** '15년 180억원 → '16년 540억원
- (전기자전거 활성화)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 변경하여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자전거법 개정, '16.4/4)
 - * 최고속도 및 무게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상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경찰청)

④ 스포츠 서비스업 육성

- (에이전트 육성) ①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 마련('16.4/4), ②프로야구 에이전트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 개선('16.4/4)
 - *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지정된 변호사는 1명의 선수만 대행 가능(KBO)
- (국가간 프로스포츠 교류 활성화) 동아시아 정기 대항전을 개최 ('15년: 농구, '16년: 배구, '17년: 야구)하고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⑤ 스포츠 저변 확대

- (학교체육) 학교체육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경감(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16.2/4)
-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대회에 대한 정부지원 종목을 확대(6→15개, '17년)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화
 -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성 제고를 위해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16.2/4)하고, 사회적 기업 전환 유도
 - *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종목·프로그램 및 전문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15년, 30개)

[2] 공유경제 활성화

◇ '08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세계시장 규모: ('10)8.5억불 → ('14)100억불)
⇒ 공유경제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서비스 新산업으로 육성하되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 최소화

[1] 숙박공유

-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
→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하여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
-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 등록토록 하고, 영업일수(연간 120일 이내)를 제한
-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 도입(규제프리존 특별법 반영), 추후 전국적 확대 추진((가칭)숙박업법* 국회 제출, '17.6월)

* 개별법률에 산재된 숙박업 규정을 통합

[2] 차량공유

-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3/4),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17.2/4)

* (기존) 면허보유여부 → (개선) 면허종류, 면허정지여부 추가

- (주차장 확보)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16.1/4)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 재정비*('16.7월)

* 주차장 사용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주차장 사용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허용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 (차량공유 확산)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국토부-지자체 MOU, '16.4월)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에 도입('16.4/4)

*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55개 단지)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중

[3] 금융공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15.7월) 및 시행('16.1.25일)

[3]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소득향상 등으로 빠르게 성장중

*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13)330조원 → ('20)635조원 (연평균 9.8% ↑)

⇒ 우수한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 필요

[1]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16.3/4) →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 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

[2]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첨단 바이오제품 개발 촉진

-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의료와 ICT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16.2/4)
- (신약 약가 우대)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 기준을 마련하여 신약개발을 촉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준 마련, '16.1/4)
- (의약품 시설투자 세제혜택)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16년말 → '19년말)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6.4/4)

[3]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시 (현행) 관리종목 지정 3년 유예
→ (개선)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최대 5년 유예)

[4]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 국내대학들이 해외진출을 통해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 수요 흡수를 적극 추진 중

* 글로벌 교육시장에서는 32개 국가의 대학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경쟁 중
(예: 중국 Ningbo 노팅엄 대학교(중국 저장완리학원 + 영국 노팅엄 대학))

⇒ 대학교육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

[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

○ 국내대학이 해외에서 현지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학위수여를 위해 국내에서 이수해야하는 학점 이수 요건을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6.8월)

* (현행)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1/2이상 이수 필요 → (개선 예시) 국내 대학 프로그램 해외수출, 국내1년+외국3년 교육과정 등

○ 국내·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해외 진출 추진 대학에 맞춤형 컨설팅 등 정보제공 확대('16.8월)

[2] 해외캠퍼스 설립기준 마련

○ 대학의 위치변경을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하여 해외캠퍼스 설치 법적근거 마련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16.8월)

○ 교육부 인가신청 전 단계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 폐지('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6.8월)

* 대학 해외진출시 현지국가 법상 적법여부, 관리운영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나 현재 현지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에 실시되어 실효성 저조

- ◇ 농림어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필요
- ◇ 단순 생산보다는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의 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① 농림수산 투자를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유도

- (농업)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농업의 대형화 추진
 - *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지역) 농업진흥지역내 전후방 제조시설 설치 허용 (인센티브) 최장 30년 임대 허용 (인프라) 첨단유리온실 기반시설 구축 등
- (어업) 양식업의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양식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제정, '16.4/4)
 - * 현재 근로자 1,000명, 자산 5,000억원 이하 기업만 양식투자 가능
 - 유망업종(연어, 참치 등) 대규모 외해양식단지 조성 추진('16.2/4)
 - * 적합지역 선정, 면허발급 이해조정능력 제고, 면적제한 완화(20→60ha) 등
- (임업)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 확대(산양삼: 10ha → 100ha, 국유 재산관리규정 개선, '16.2/4)

②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추진

- (판로) 공공조달·중기전용홈쇼핑의 활용도 제고('16.3/4)
 - * 유기농, 친환경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 입점 확대 및 전용 판매타임 지정·운영
- (융복합) 생산·판매·숙박·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 도입(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16.4/4)
- (어항개발)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현재는 어촌계, 수협에 매각)에게도 허용하고(어촌어항법 개정, '17년), 공유수면에 수상(水上)상업시설·레스토랑 설치('16년~)
- (전통주) 과잉규제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주 시설기준을 완화(현행 식품기준 적용 + 일부 조례로 완화)하고, 온라인 판매 허용범위 확대(우체국, 농협 등 → 중기전용 홈쇼핑, 나라장터 등)

③ 한-중 FTA를 활용하여 한국産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상품화

- (수출지원) 수출 유망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클러스터 내 외투기업과 국내 식품기업간 합작투자 등 매칭 지원('16~)
- * (쌀)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 (김치)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등
- (R&D · 인력) 신성장동력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 (예: 스마트양식 등)('16.2/4)하고, 농수산대학 학과를 학부제로 개편('16.4/4)
- (유기농) 유기농산물 재배매뉴얼 제작,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16.2/4)
- (원산지 표시) 의무표시 수산물 확대*(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 '16.4/4), 주요 한약재에 대한 자율표시 여건 조성**
- * (현행) 넙치 등 9종 → (추가) 오징어, 꽃게, 조기, 농어 등 + 초밥용 수산물
- ** (한약제제) 원산지 표시 권고(의약품 안전규칙 개정) + 표시업체 정기 공개 (한약) 자율표시 + 인센티브 부여(우수표시업소 평가인증제 신설 등)
- (생산비용 경감) 수산·축산·임업용 국유재산의 대부요율 인하*('16.2/4)
- * 기본 5% → 양식용, 축사용, 산림식재용을 2~3%로 인하

④ 귀농여건을 개선하고 어업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젊은층 유입 촉진

- (주택)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적용)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특법 개정, '16.4/4)
- * 귀농주택: 농지 사전소유(1,000㎡) 필요 → 귀농 후 일정기간 내(예: 1년) 농지 취득시에도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 * 농어촌주택(취득가 2억원이하, 대지 660㎡ 이하) : 건물연면적 요건(150㎡) 폐지
- (인프라) 교육청 보유 폐교의 지자체 무상임대 요건 완화 → 폐교를 귀농·귀촌센터로 활용('16.3/4)
- (어업 진입장벽) 어선(선박+어업허가) 공개시장 조성(어선법 개정, '16.4/4) 및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수협 조합원 10인 이상 → 5인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6.3/4)

◇ 규제완화와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 ①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입지지원) 새만금 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 허용(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 (자금지원)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설비투자 보조율을 일반지역보다 최대 10%p 가산)에 포함('16.12월)
 - (세제지원)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감면 검토('16.6월)
- ② 미개발구역 개발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 신설(조특법 개정, '16.12월)
 - 사업시행자에게 국가귀속 잔여매립지에 대한 장기임대(최대 100년)를 허용하고, 우선매수청구기간도 현행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임대 종료 시점까지 연장(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 ③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개선
 -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도입('16.3월)
 - 새만금 내에서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건축규제에 관한 특례 부여(새만금특별법 개정, '16.4/4)
- ④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16.6월)
 - 기업의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를 위해 인근 시·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지역부터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16.6월)